



##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2021- 44호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제5-2판) 안내

춘포초등학교 교장실 842-8213. 교무실 842-8211. 행정실 842-8212, FAX 842-3448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감염병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이 있으시겠지만 방역 수칙을 재차 강조하여 안내 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등교 전 자가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립니다.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고(기본원칙)**,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 제5-2판의 일부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꼭 확인하시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1

#### 기본방역수칙 준수

- 1) **등교 시 꼭 마스크(KF80 이상 권장)를 착용합니다.**
-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4) 본인 또는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 대상 발생 시 등교중지대상**이 됩니다.
- 5)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 6) PC방,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 2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 기준 안내(11.22부터 적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주요 임상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목 아픔), 후각·미각소실 등
	원칙	- 등교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 검사 실시 (코로나 증상과 감기, 독감과 구별 어려움) - 가정에서 쉬며 경과 관찰 후 임상증상이 사라지면 등교 가능
	출석 인정 증빙 자료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등 제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단순 감기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등교 불가  *출석 인정 증빙 자료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의심 증상이 있으나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출석 인정 증빙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본인이 자가격리자일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자가격리 준수(등교중지)  *출석 인정 증빙 자료 : 자가격리 통지서, 검사 결과 문자 사본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 ※다만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출석 인정 증빙 자료 : 문자 통지 사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동거인의 검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 또는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경우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수동감시 대상 등이 되며, <b>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등교 가능</b> *「코로나19 대응지침」,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에 따른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출석 인정 증빙 자료 : 동거인의 확진 통지서 또는 문자 통지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가족 또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단하되, <b>아래의 조건에 하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교 가능함</b> <b>1. 예방접종 완료자는 등교 가능</b> <b>2.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 가능</b> 3.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b>4. 확진 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 가능</b> (동거인인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 실시에 의한 경우 포함)  *출석 인정 증빙 자료 : 자가격리 통보서, 문자 통지 사본, 주민등록 등본,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2021. 11. 23.

춘 포 초 등 학 교 장